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8.

발 의 자: 어기구 • 유동수 • 문진석

서영석 • 야진(비) • 주철현

김주영 • 박영순 • 박 정

서동용 · 노웅래 · 김상희

정일영 · 박재호 · 윤준병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.

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, 이행명령하고 위 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3조제1항 중 "5천만원 이하"를 "1억원 이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.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과태료) ① 제34조제3항에	제43조(과태료) ①
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	
자에게는 <u>5천만원 이하</u> 의 과태	<u>1</u> 억원 이하
료를 부과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